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. 8. 17 선고 2022가단2670 판결 [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
반환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해

변 론 종 결 2023. 7. 20.

판 결 선 고 2023. 8. 17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,6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
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 관계

원고는 F(일명: G)에 대한 채권자이고, F과 피고들은 망 H(2020. 8. 3. 사망, 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의 자녀들이다.

나. F의 상속포기

F은 2020. 11. 6.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이 법원 2020느단316로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았다.

【인정근거: 다툼 없는 사실, 갑5호증, 을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】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F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강릉시 I외 2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 건물에 관하여 F의 1/5 지분만큼 더 상속받게 되었고, 이는 F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, 피고들을 상대로 위 지분 증가액 상당 각 86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.

나. 판 단

1) 별소 제기 없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

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은 형성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의 결합으로 채권자취소의 소의 성질도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의 결합이라 할 것인바,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원상회복을 구하지 아니한 채 사해행위의

취소만을 먼저 청구하는 것은 허용이 되나, 원상회복만을 청구하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해행위의 취소도 함께 소구하여야 하며,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(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다11008 판결).

원고는 F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취소를 소로써 구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에 대한 가액반환청구에 대한 공격방법으로 F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뿐이므로,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
1)에서 살펴 본 바와 달리 만약 원고가 별소 또는 청구의 병합으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한다 하더라도, F이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법원에 의하여 수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, 이와 같은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'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'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(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11다29307 판결),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.

3. 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정원석